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9 선고 2016가단5091836(본소), 2017가단1514(반소)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의 소 · 미지급금]

전 문

원고(반소피고)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철호

피고(반소원고) 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E

변론 종결 2017. 9. 12.

판결 선고 2018. 1. 9.

주 문

1. 원고(반소피고) A은 피고(반소원고)에게 47,772,6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으로부터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들(반소피고 포함)에게 별지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와 2000. 12. 18. 접수 제7412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반소피고 포함)들의 나머지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 포함)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들(반소피고 포함, 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에게
별지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와 2000. 12. 18. 접수 제7412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반소 :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의 부(父)인 F은 2000년경 피고와 D 대리점 약정을 체결하였고, 2000. 12. 18.

피고로부터 매입하는 제품대금의 담보를 위하여 별지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채무자 F, 채권최고액 40,000,000원, 채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와 2000. 12. 18. 접수 제74127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원고 A은 2004. 3. 31. F이 운영하던 D 대리점을 인수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무자 지위를
승계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와 2004. 4. 2. 접수 제22309호로 부기등기를 마쳤다.

다. F은 2006. 12. 2. 사망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의 모(母)인 G이 2007. 1. 24.
상속하였다가 2015. 8. 12. 사망하여, 원고 A이 4/10, 원고 B이 4/10, 원고 C이 2/10를 각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라. 원고 A은 2013. 4.경까지 피고에게 제품을 주문하였고, 그 이후에는 피고와 거래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원고 A과 피고 사이 2013. 1. 1. 최종적으로 체결된 대리점거래약정에 의하면
'당월제품 대금을 익월 5일까지 전액 현금으로 입금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피고는 2013. 5. 기준으로 원고 A에게 별지 2. 표 기재와 같이 최종 물품대금 47,428,477원과
미입금된 장비대금 344,200원 합계 47,772,677원 상당의 미수채권이 있다면서 2016. 3. 31.

서울동부지방법원 H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바. 원고 A은 이 사건 소장을 통하여 피고와의 대리점계약해지를 통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8,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소멸시효 완성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가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한 2016. 3. 31. 기준으로 3년 전의 물품대금채무(2013. 2.월분 이전의 물품대금채구)는 시효가 완성되었고, 그 이후의 물품대금은 전부 변제하여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물품대금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6호의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2016. 2. 4. 원고 A에게 물품대금지급을 최고한 후, 2016. 3. 3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음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2016. 3. 31.로부터 역산하여 대금지급약정에 따라 2013. 3. 5.에 변제기기가 도래한 2013. 2.까지의 물품대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A에게 계속적으로 물품을 공급하며 공급대금 중 일부를 2013. 5.까지 변제받아 왔으므로 그때마다 종전 물품대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채무의 일부변제는 채무의 일부로서 변제한 이상 그 채무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동일당사자 사이에 계속적인 거래에 따라 수 개의 대금지급채무가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 전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금액을 채무의 일부로 변제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수 개의 채무 전부에 대하여 승인을 하고 변제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1980. 05. 13. 선고 78다1790 판결 참조), 피고는 2013. 4.까지 원고 A에게 계속적으로 물품을 공급해 왔고, 원고 A은 최종적으로 2013. 5. 5.까지 피고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하여 왔으므로, 이로써 2013. 5. 5.에는 위 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할 것이고, 그로부터 3년 이내에 물품대금 지급을 최고한 후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음은 역수상

분명하므로, 피고의 재항변은 이유 있어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원고들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다59959 판결,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8940 판결은 "각 개별 거래시마다 서로 기왕의 미변제 외상대금에 대하여 확인하거나 확인된 대금의 일부를 변제하는 등의 행위가 없었다면, 새로이 동종 물품을 주문하고 공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기왕의 미변제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인바, 동종의 물품을 주문하고 공급받은 것을 넘어 대금의 일부를 변제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의 강요에 의한 미수상환계획서 작성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가 조작된 물품금액으로 원고 A에게 미수상환계획서의 작성을 강요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거래내역이 적힌 거래장을 원고 A에게 보여주지도 아니한 채 작성하게 하였으므로 위 미수상환계획서에 기재된 금액 자체가 부풀려 작성된 것으로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원고들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위 미수상환계획서가 강요에 의하여 작성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미수상환계획서 기재 금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을 5, 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A은 원고에게 ① 2011. 8. 31. 미수금 22,639,119원을, ② 2012. 2. 7. 미수금 21,798,151원을, ③ 2012. 5. 9. 미수금 19,308,138원이 각 존재함을 확인하고 대금결재를 이행할 것을 약속한 점, 원고 A이 피고에 대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서는 직접 피고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과 금융권(카드 등)과 연계한 씨엠에스 청구방식(금융기관이 피고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입금하고, 이후 대리점주가 해당 금융계좌로 상환하는 방식임)이 있는데, 미수상환계획서 작성시점에는 당해 월의 매출 및 미수금이 확정되지 않아 미수상환계획서 작성 당시의 미수금은 실제 해당 매출액과는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가 작성한 거래장은 회사 전산양식으로 되어 있고 거래장에 기재된 외상매출금이 미수상환계획서상의 미수금과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미수상환계획서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채무면제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제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하였고, 이에 2013. 7.

26. D대리점협의회와 상생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중재절차를 통하여 대리점주들에게 손해액을 배상하였는바, 위 배상절차 진행 당시 피고 직원이었던 J은 2014. 5.까지 남아있던 원고 A의 미수금을 전액 탕감해주기로 한 후 원고 A에게 2014. 12. 16.까지 중재배상액 100,981,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 A이 피고에게 지급해야 한 미수금은 면제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 A이 중재배상액으로 100,981,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중재배상액을 지급받을 당시 기존 미수금을 면제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이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 A으로부터 아래 반소청구에서 인용하는 금액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들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A으로부터 받지 못한 미수금 등의 채권 잔액은 47,772,677원이고, 그 지급채무는 물품을 공급받은 날 변제기에 도달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A은 피고에게 47,772,677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피고가 구하는 이 사건 반소장부분 송달 다음날인 2017.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들의 본소청구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머지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선희

별지